농림축산식품부 |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4. 30.(수) 06:00 / 4. 30.(수) 석간 | 배포 2025. 4. 29.(화) 16:00

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7개소 적발

- 원산지 거짓표시 42개 업체 형사입건, 미표시 25개 업체 과태료 770만 원 부과 -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장 박순연, 이하 농관원)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,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하였다.

농관원 사이버단속반(295명)이 온라인 플랫폼,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*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.

* 소비자교육중앙회, 한국여성소비자연합, 한국소비자연맹, 소비자시민모임, 한국부인회, 한국YWCA연합회, 녹색소비자연대, 해피맘,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

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(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)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,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.

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①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, ②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, ③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도 있었다.

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, 주소, 위반내용,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(https://www.naqs.go.kr)에 1년간 공표된다.

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“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.”라고 말하며 “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붙임 1.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
2.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리플릿 사진
별첨 통신판매 단속현장 사진

담당 부서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	책임자	과 장	박홍진 (054-429-4151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교 (054-429-415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

강원도 소재 ○○제조업체는 국내산과 외국산 원료로 제조한 과자류의 원산지를 00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→ 형사입건

전라남도 소재 ○○제조업체는 외국산 원료로 만든 떡의 원산지를 00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→ 형사입건

경기도 소재 ○○제조업체는 중국산 깻잎무침의 원산지를 ○○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혼동 우려 표시 → 형사입건

전라남도 소재 ○○유통업체는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○○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혼동 우려 표시 → 형사입건

경기도 소재 ○○유통업체는 중국산 마늘을 ○○중개사이트에 원산지를 미표시 → 과태료 부과

붙임2 **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리플릿 사진**

